## 국제핵융합실험로(ITER) 공동개발사업 국내전담기관지정

[시행 2021. 1. 12.] [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-2호, 2021. 1. 12., 일부개정]

과학기술정보통신부(거대공공연구협력과), 044-202-4664

「국제핵융합실험로 사업의 공동이행을 위한 국제핵융합에너지 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」제8조제4항에 따라 국제핵융합실험로(ITER) 공동개발사업의 관리·집행을 담당하는 국내전담기관으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지정한다.

다만, 국제핵융합실험로(ITER) 공동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한국핵융합에너지 연구원 내 'ITER 한국사업단'이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 대표하여 수행한다.

부칙 <제2021-2호,2021.1.12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